

정 관

- 제정 2006. 04. 11 민법 제32조, 제4조
- 개정 2006. 06. 15 보건복지부 허가 제318-1호
- 2006. 10. 26 보건복지부 허가 제318-2호
- 2008. 05. 21 보건복지가족부 허가 제318-3호
- 2008. 08. 11 보건복지가족부 허가 제318-4호
- 2009. 12. 07 보건복지가족부 허가 제318-5호
- 2010. 05. 28 보건복지부 허가 제318-6호
- 2011. 12. 21 보건복지부 허가 제318-7호
- 2012. 07. 17 보건복지부 허가 제318-8호
- 2012. 12. 27 보건복지부 허가 제318-9호
- 2013. 12. 24 보건복지부 허가 제318-10호
- 2014. 04. 21 보건복지부 허가 제318-11호
- 2016. 01. 20 보건복지부 허가 제318-12호
- 2017. 01. 23 보건복지부 허가 제318-13호
- 2017. 07. 19 보건복지부 허가 제318-14호
- 2019. 05. 14 보건복지부 허가 제318-15호

사단법인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사단법인 한국척수장애인협회”(이하“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척수장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변함으로써, 척수 장애인들이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가진 사회의 주류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척수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 ①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②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분사무소로 시·도에는 협회를 설치할 수 있고, 시·군·구에는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척수장애인의 권익옹호사업
2. 척수장애인의 재활지원사업 및 복지 시설 운영사업
3. 척수장애인의 관련학술연구지원 및 간행물 발행사업
4. 척수장애인 문화, 체육 진흥사업(문화제 및 예술 활동, 생활체육 등)
5. 척수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 센터의 운영 및 지원
6. 척수장애인 교육 및 장학사업
7. 기타 본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
8.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설치운영사업
9.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10. 인권 및 장애인식개선교육사업
11. 장애인복지관설치운영사업
12. 국제개발협력사업
13. 장애인가족지원사업

제4조의2(수익사업의 종류) 제4조 제7호의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 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가구
2. 인쇄
3. 피복
4. 씨씨티비
5. 기타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품목
6. 복사용지 제조 및 판매
7. 봉투제작
8. DM발송
9. LED 제조 및 판매
10. 정보통신공사업
11. 폐기물처리사업
12.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13. 도로전광표지판 제조 및 설치, 판매

- 제4조의3(수익사업단의 구성 등)** ① 회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본 회의 수익사업단은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본 회의 수익사업단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① 정회원은 척수장애인으로서 본회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적극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② 준회원은 정회원의 가족 및 각급기관, 단체, 기업 등의 장 또는 사회 저명인사로서 본회의 사업취지에 찬동하고 정신적, 육체적 또는 경제적으로 후원하며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③ 명예회원은 본회의 사업취지에 찬동하고 본회의 목적사업에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적극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이사회의 의결로 위촉한 자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①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고 각 협회 회원총회의 발언권, 의결권을 갖는다.

② 본회의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우선 참여 할 수 있다.

③ <삭제>

제8조(회원의 의무) ① 본회의 회원은 정관 및 제 규정, 각급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② 정회원은 입회비, 년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준회원과 명예회원은 본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 회원은 본회에 탈 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 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할 수 있다.

③ 본회의 회원이 탈퇴하거나 제명 또는 사망으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 하였을 때에는 잔여기간에 비례하여 이미 납부한 회비 및 기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회는 제1조와 제4조의 목적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수석부회장과 3인 이내의 일반부회장을 둘 수 있다.
3. <삭제>
4. 이사 : 7인 이상 15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한다.)

5. <삭제>
6. 감사 : 2인 이하로 정한다.
7. 직원 대표 1인 이상을 반드시 이사로 선임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이사로 선임한다.

제11조(자격) 본회의 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다.

1. 본회 설립당시의 발기인
2. 본회에 상당한 재산을 기부한 정회원
3. <삭제>
4. 본회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거나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회원으로서는 이사회가 추천한 자
5. 감사 중 1인 이상은 공인 회계사, 세무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 한다.(단 준회원 또는 명예 회원도 가능하다)

제12조(임원의 선출) ① 본회의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단, 회장은 본회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 ② 선출된 회장은 이사회를 구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부회장은 회장이 필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상근 및 비상근으로 지명하고 이사회 동의 얻어 선임한다.
- ④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개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궐위된 임원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사회 동의로 선임한다.
- ⑤ <삭제>
- ⑥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로 차기 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 선출 시까지 전임자가 그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 ⑦ 총회에서 승인된 이사는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 통보 하여야 한다.
- ⑧ 회장의 선출 방식은 선거관리 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과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③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관장하고, 회장 유고시는 수석부회장, 일반부회장(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는 회장, 부회장을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 직능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④ <삭제>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해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협회의 제명 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

제16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 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추인을 받아 결정한다.
5.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상임부회장)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위해 상임부회장을 둘 수 있다.

- ② 상임부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선임한다.

제18조(임원의 보수) ① 본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서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 ② 담당이사에게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 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1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① 대의원은 본회의 이사와 시·도 협회별 당연직대의원 및 일반대의원으로 한다.
- ② 시·도 협회별 당연직대의원은 2명으로 하되, 1명은 시·도 협회장으로 하고, 다른 1명은 시·도 협회의 운영위원 중에서 추천된 자로 한다.
- ③ 시·도 협회별 일반대의원은 각 시·도 협회장이 추천한 자로 하되, 그 수는 아래와 같다.
 - 50명 이상, 100명 미만 : 1명
 - 100명 이상, 200명 미만 : 2명
 - 200명 이상, 500명 미만 : 3명
 -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 4명
 - 1000명 이상 : 5명
- ④ 모든 대의원은 총회 공고 전에 사전등록 되어야 한다.

제20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총회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 까지 통지하여야한다.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

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한다.

1. <삭제>

2. 제16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2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② 법인의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③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단, 해임에 관해서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한다.

1.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그 임원이 취임한 날로부터 만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2. 해임안은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결의한다.

3. 해임안이 결의되었을 때에는 당해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④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승인의 관한 사항

⑤ 회비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3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이사회 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4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

4.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한 사항

5. 기타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6. 기타 본회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26조 <삭제>

제27조(의결제척사유) 이사회 구성원 또는 대의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28조(서면결의 금지) 원칙적으로 이사회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고 그 사항은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 및 썬포터즈) ① 본회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회장은 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 및 썬포터즈를 둘 수 있다.

② 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의 직무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썬포터즈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정족수) 본회의 각급회의는 본 정관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구성원의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한 번의 재투표를 할 수 있다.

제31조(소집) 본회의 총회와 이사회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회의 목적 및 안건을 명시하여 구성원에게 회장이 통지한다.

제32조(회의록) 본회의 모든 회의는 기록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의장은 간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3조(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으며, 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기본재산 목록에 기재된 재산
2. 본회가 소유한 부동산
3. 본회 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
4.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기본재산에 편입한 재산

제34조(재산의 관리) ① 본회의 재산은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매각, 양도, 교환,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하고자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본회가 매수, 기부, 후원 및 기타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회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 수익금은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으며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사업확대, 안정화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

제35조(재원) 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수입
6. 총회 결의로 외부단체의 출자나 용자를 받을수 있다.

제35조의 2(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회장은 당해연도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의 3월말까지 본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36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삭제>

② <삭제>

③ 사업계획 및 예산안과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은 본회의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회계 및 직무감사) 감사는 회계 및 직무감사를 연1회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 <삭제>

제39조(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0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7장 사무처

제41조(사무처)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을 두되,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리하며 사무처 및 소속기관의 업무를 지휘, 감독 한다.

③ 사무총장은 이사회 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면하고, 사무처 직원의 임면은 사무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처의 조직, 운영과 직원의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되 이사회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2조 <삭제>

제43조(시·도협회) ① 본회는 정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각도에 시·도 협회를 둘 수 있다.

② 시·도 협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되 이사회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44조(해산 및 합병) 본회는 영구존속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구성원의 4분의 3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45조(정관개정) 본회의 정관개정은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46조(잔여재산의 처분)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47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 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9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6. 1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0. 2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5. 2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8. 1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2. 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5. 2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2. 2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7. 1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2. 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2. 2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4. 2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 2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된 회장과 이사 및 감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7. 7. 1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5. 1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사단법인 한국척수장애인협회장 정진완 ㉠